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 이전 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 수출통제 이행방안 연구

윤성호*, 서하나, 이찬서, 최선도, 신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shyoon@kinac.re.kr

1. 서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수출통제 선진국은 전략기술의 유형이전 외에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법령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략기술의 이전 통제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1].

기존의 법령에 따르면 전략기술 이전의 통제는 특정 용역, 특허권의 양도 등과 같이 기술이 종이, 메모리 등의 기록매체를 통해 유형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전화, 팩스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과 교육, 훈련과 같은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의 경우에도 수출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인지 여부를 판별하고, 전략기술에 해당할 경우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과 관련한 기술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입국이 평화적 이용을 담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정부보증 수령을 전제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2].

무형이전되는 기술의 대부분이 기업보다는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통제 및 관리 실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국 정부의 평화적 이용 보증은 전략기술의 확산 방지 측면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기술이전 활동 모두에 정부보증을 요구할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의 행정부담으로 인해 수출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시 수출통제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 수출허가 신청사례 분석을 통해 원자력전용품목 생산·연구개발 기관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해 외국인에게 전략기술 이전시 효율적인 수출통제 이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2. 본론

2.1 외국인 고용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

하는 경우 또는 외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와 다르게 통제되어야 한다.

원자력전용품목을 취급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은 채용에 앞서 신원을 조회하고, 회사와 개인 간에 기밀유지각서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가정 하에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통제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핵보유국 또는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 Group, NSG)의 회원국의 핵비확산 정책은 신뢰 가능하다. 이에 핵확산 우려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국적인을 대상으로 한 허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수출자 및 수입자가 이전된 기술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통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자의 통제 교육 이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외국인의 국적이 핵보유국 또는 NSG의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기간 전체를 포괄하여 허가를 발급하고, 수입국 정부의 평화적 이용 보증 수령 대신 이전된 기술 목록의 주기적 확인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수출통제 근본 목적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수출한 원자력전용품목의 품질관리 또는 검증을 위해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최종사용자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 아니라 최초 수입한 외국기업이므로 제3국의 정부보증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최초 수출 시, 한국기업의 수출허가서에 수입 기업이 최종사용자로 명기된 경우, 제3국의 정부 보증은 불필요하다. 다만, 사후보고를 전제하여 수출허가의 발급하면, 최종사용자가 기술이전 이력을 관리 하여 수출통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핵비확산 노력을 기울이도록 보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외국인 대상 교육훈련 활동

국내 대다수의 기관이 신형 원자력발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 원리 및 운영 절차, 원자로 설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전 운영 및 원

자로 설계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경우 원자력전용품목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기술, 즉 전략기술에 해당하며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교육 교재에 세부기술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강의자가 구두나 행위를 통하여 전략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략기술이 무형적 수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교재가 전략기술 포함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강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교육이 필요하다.

수출허가의 지침은 대상 국가의 핵비확산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정부보증의 경우, 핵국을 대상으로는 무의미하다. 또한 정부보증 상 요구사항을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있는 NSG 지침 및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은 정부보증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NSG 회원국 또는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가의 피교육자는 정부보증 면제가 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교육이 면제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 외 국가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정부보증 수령하기 위한 행정부담과 수입국의 통제 노력에 비해 핵비확산 효과가 미미하므로, 피교육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교육을 전제하여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을 불문하고 사전에 모든 외국인의 신상정보서를 거래부적격자와 대차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3 외국인 대상 자문

외국인 대상 자문은 교육훈련과 성격이 유사하나,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며 유형기술이 없이 기술지원의 방식으로 무형이전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핵비확산 및 수출입통제 교육 후에 수입국 정부보증을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결론

기술이전 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이전과는 달리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이전 시, 수입국 정부의 평화적 이용을 보증하는 문서 수령에 따른 소요시간 및 행정 부담 등의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원자력 수출사업에서 근거하여 국내에서 예상되는 기술의 무형이전 형태를 분석하여 핵비확산의 목적을 만족하면서, 행정 부담을 최소

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도 국내 원자력 관련 기술은 외국인 학생의 유치, 계약 체결전의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전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이전 사례를 확대 분석하여 무형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4.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원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5. 참고문헌

- [1]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 [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43호, 2016.